



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동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의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영 제42조제1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79·2·17, 79·5·21, 80·2·9, 81·2·7, 81·3·26, 82·3·20, 83·2·28, 84·2·2, 84·11·6, 85·3·15, 86·3·31, 87·12·31, 89·3·6, 89·5·10, 90·1·4, 90·4·4>

1. 삭제 <90·4·4>
2.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관리공단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사단법인 한국4-에이취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또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조직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갯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갯생보호회에 갯생보호사업을 위한 사업비·시설비·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또는 사단법인 1천

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5. 대한민국재향정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정우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7.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8.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나병퇴치를 위한 의료사업 및 연구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되는 기부금
20.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2.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4.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6.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본조신설 77·8·23]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76·12·31, 77·8·

20, 78·4·24, 78·12·30, 81·12·31, 85·12·31, 88·12·31, 89·12·30>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시설비·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3.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8.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유공회비
11.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

립한 각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
15. 제 1호 내지 제 14호와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16.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

(전문개정 74·12·31)

다. 법인세법

제18조 (寄附金の 損金不算入) ①內國法人이 事業年度에 支出한 寄附金중 社會福祉·文化·藝術·教育·宗教·慈善등 公益性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寄附金(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大統領令이 定하는 非營利公益法人의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分の 60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초과하는 金額과 指定寄附金 이외의 寄附金은 당 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 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指定寄附金의 경우에도 第18條 의2의 規定에 의한 接待費와 이와 類似한 金額의 범위액에 未達하는 金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未達하는 金額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事業年度 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損金에 算入한다. <改 正 76·12·22 法2931, 78·12·5 法3099, 88·12·26>

1.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第3項의 規定에 의 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 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서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되는 寄 附金과 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缺損 金を 差減한 금액에 100分の 7(租稅減免規制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法人외의 非營利內國 法人의 경우에는 100分の 2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2. 당해 事業年度의 每月末日 현재의 株式發行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合計額을 12로 나눈 金額에 100分の 2를 곱하여 算出한 金額

②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에 열거하는 寄附金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열거하는 寄附金の 合計額이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서 第8條第1號의 缺損金を 差減한 金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金額은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88·12·26>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寄贈하는 金品の 價額
- 2. 國防獻金과 恤兵金
- 3. 天災·地變으로 생긴 罹災民을 위한 救護金品の 價額

③第1項第2號의 株式發行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74·12·21]

제18조의2 (接待費등의 損金不算入) ①內國法人이 各 事業年度에 支出한 接待費로서 다음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金額은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79·12·28, 81·12·31>

- 1. 600萬원에 당해 事業年度의 月數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算出한 金額
- 2. 당해 事業年度의 每月末日 現在の 株式發行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合計額을 12로 나눈 金額에 100分の 2를 곱하여 算出한 金額
- 3. 당해 事業年度의 收入金額(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千分の 1 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收入金額에 1千分の 2를 곱하여 算出한 金額으로,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에 대하여는 그 收入金額에 1萬分の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各目的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の 1)

를 곱하여 算出한 金額으로 한다.

②第1項에서 “接待費”라 함은 接待費 및 交際費·機密費·謝禮金 기타 名目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類似한 性質의 費用으로서 法人이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 金額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出한 機密費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내의 金額은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 接待費로 본다. <改正 81·12·31, 90·12·31>

③第1項第2號의 株式發行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接待費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各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損金에 算入한다. <新設 81·12·31> [本條新設 74·12·21]

2.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서관에 관계된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이 재무부령 1,848호로 1991년 3월 6일 재무부장관령으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다.

제53조의2 제27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7.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연구비·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8.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의 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9.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조직에 사업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의2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영 제102조제1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79·2·17, 79·5·21, 80·2·9, 81·2·7, 81·3·26, 82·3·20, 83·2·28, 84·1·23, 84·11·6, 86·4·4, 87·5·16, 89·3·6, 89·3·31, 90·1·4, 90·3·15>

1호-26호는 법인세법시행규칙과동일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77·8·20, 78·4·24, 78·12·30, 81·12·31, 85·12·31, 88·12·31, 89·12·30>  
1호-15호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동일

다. 소득세법

제49조 (寄附金の 必要經費不算入) ① 社會福祉·文化·藝術·教育·宗教·慈善등 公益性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寄附金(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金額과 指定寄附金 이외의 寄附金은 第47條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不動産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當해年度의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指定寄附金의 경우에도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할 金額에 未達하는 接待費와 이와 類似한 金額이 있는 때에는 그 未達하는 金額의 범위안에서 이를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當해年度의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改正 76·12·22 法2933, 78·12·5, 88·12·26>

1. 當해年度의 所得金額(第47條에 規定하는 寄附金 또는 第58條第2項에 規定하는 移越缺損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差減한 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에 100分の 1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2. 當해 課稅期間의 每月 末日 現在의 出資金額의 合計額을 12로 나눈 金額에 100分の 2를 곱하여 算出한 金額

제47조 (寄附金の 必要經費計算) 다음 各號의 寄附金은 不動産所得·事業所得 및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이하 “事業者”라 한다)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當해年度의 所得金額(第58條第2項에 規定하는 移越缺損金이 있는 때에는 當해 移越缺損金を 差減한 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이를 當해年度의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改正 81·12·31, 88·12·26>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無償으로 寄贈하는 金

品の 價額

2. 國防獻金과 恤兵金
3. 天災·地變으로 생긴 罹災民을 위한 救護金品の 價額

제50조 (接待費등의 必要經費不算入) ① 事業者가 當해年度에 支出한 接待費로서 다음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金額은 當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79·12·28, 81·12·31>

1. 600萬원에 當해 課稅期間의 月數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算出한 金額
2. 當해 課稅期間 每月 末日 現在의 出資金額(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合計額을 12로 나눈 金額에 100分の 2를 곱하여 算出한 金額
3. 當해 事業에 대한 收入金額의 合計額에 1千分の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는 1千分の 2)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

② 第1項에서 “接待費”라 함은 接待費 및 交際費·機密費·謝禮金 기타 名目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類似한 性質의 費用으로서 事業者가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 金額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出한 機密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내의 金額은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 接待費로 본다. <改正 81·12·31>

③ 第1項第2號의 出資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接待費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當해 年度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新設 81·12·31>

회원동정

1. 충청북도 중앙도서관

충청북도 중앙도서관의 신축이전으로 주소 및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2동 38-6
- 전화번호 : 관장실 : 67-4594  
사서과 : 67-4592  
열람과 : 67-4593

2. 동신대학도서관

동신공과대학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변 경 전	변 경 후
동신공과대학	동신대학

3. 초청강연

이두영(한국정보관리학회 회장, 중앙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및 노옥순(한국도서관협회이사, 한국도서관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학과)교수는 1991년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개최되는 일본 학술정보센터 국제공동연구 제8회 공개강연회에 초빙강사로 초청되었다. 이두영교수의 강연제목은 “한국의 국가전산망계획 ; 교육, 연구전산망을 중심으로.”이었으며, 노옥순교수의 강연제목은 “한국에 있어서 도서관정보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이었다.

사무국일지

(1990년)

12월26일 자문위원회 개최

12월28일 도서관관계법 연구위원회 회의

(1991년)

1월16일 제1차 기획발전위원회 회의

1월18일 편집위원회 회의(1차)

1월22일 분류위원회 C팀 소회의

2월 1일 도서관관계법 소위원회 회의

2월 7일 도서관관계법 연구위원회 회의

2월 9일 도서관관계법 소위원회 회의

2월13일 본會 회장, 부회장 및 정보관리학 회장 문화부장관과 간담회

<내방인>

(1990년)

12월17일 김태승(경기대학교 도서관학과)교수, 이두영(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12월19일 이용남(한성대학 문헌정보학과)교수

(1991년)

1월 5일 김향신 선생

1월 8일 임윤수(前 대전연정국악연구원)선생, 현규섭(공주대학 도서관교육과)교수

1월10일 김인영선생

1월15일 손정표(경북대학교 도서관학과)교수

1월17일 김용성(명지대학교 도서관학과)교수, 김성원선생

1월18일 박희영선생, 한성택(숭의여전 도서관과)교수

1월22일 김포옥(전북대학교 도서관학과)교수

1월23일 宮川隆泰(일본 미쓰비시 종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월25일 심우준(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1월30일 임중순선생, 강순애(국립중앙도서관)선생

2월 7일 윤병태(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2월 8일 정선애(세마을이동도서관)선생

2월11일 채희균(육군사관학교도서관)선생의 이대도서관학과 1기 졸업생

2월19일 광동철(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실)선생, 김종희(원자력병원 의무정보실)실장

신입회원

<단체회원>

송악도서관

광주중앙도서관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도서관

연기군립도서관

함안군립도서관

<개인회원>

김은영(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418)

- 김화자 (서울시청소년사업관 부설 도서관)  
 강우석 (건국대학교 도서관)  
 구현모 (건국대학교 도서관)  
 김명원 (건국대학교 도서관)  
 김삼규 (건국대학교 도서관)  
 변태경 (건국대학교 도서관)  
 서유선 (건국대학교 도서관)  
 서찬임 (건국대학교 도서관)  
 송규철 (건국대학교 도서관)  
 임진희 (건국대학교 도서관)  
 조영주 (건국대학교 도서관)  
 조운정 (건국대학교 도서관)  
 최현경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  
 박정미 (고려병원 도서관)  
 김경식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도서관)  
 윤연신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도서관)  
 이재숙 (경기 하남시 풍산동 41)  
 주영두 (남일수지상사)  
 황인몽 (배재대학 도서관)  
 박효남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도서관)  
 조은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57-34)  
 홍영미 (만도기계기술연구소 특허·정보과)  
 <평생회원>  
 박미현 (수원지방법원 도서관)  
 장기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  
 진태하 (인천교육대학부속국민학교)  
 김상준 (서울 양천구 신월2동 454-2(세일 101호))  
 송기섭 (한국해양연구소 기술정보실)  
 이승원 (창원전문대학 도서관학과)  
 황남구 (포항공과대학 도서관)  
 강순애 (국립중앙도서관)  
 조경자 (서울특별시립구로도서관)  
 장경숙 (영덕군공공도서관)  
 강순혜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김정선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김경숙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김광호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김인웅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김혜원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박필남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백현종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은식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유영애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영남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영섭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유영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종호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창기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희수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춘수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형욱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김태진 (한양대학교 도서관)  
 오근덕 (한양대학교 도서관)  
 윤덕진 (한양대학교 도서관)  
 이선희 (한양대학교 도서관)  
 장석례 (한양대학교 도서관)  
 조원용 (한양대학교 도서관)  
 최 준 (한양대학교 도서관)  
 김경혜 (광주고등법원 도서관)  
 김윤희 (서울시립도봉도서관)  
 김경숙 (인천지방법원 도서관)  
 조은정 (춘천지방법원 도서관)  
 이영자 (서울시립영등포 도서관)  
 김인순 (서울시립서대문 도서관)  
 이은한 (포항공과대학 도서관)  
 정상만 (동아대학교 도서관)  
 윤수정 (서울특별시립남산도서관)  
 이윤옥 (서울특별시립남산도서관)  
 이혜경 (서울특별시립남산도서관)  
 최순옥 (서울특별시립남산도서관)  
 정영재 (부산여자전문대학 도서관학과)  
 유경숙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정자 (울산시립중부도서관)  
 김종희 (원자력병원 의무정보실)  
 감상룡 (부산여자전문대학 도서관과)  
 이윤조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착교환자료

國會圖書館報(No. 212 대한민국국회도서관)  
 도서관(Vol. 45, No. 6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소식(No. 12 목포대학교도서관)  
 大學教育資料안내(No. 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1989 上, 下 국립중앙도서관)  
 문교월보(No. 108 문교부)  
 문화가족(No. 2 문화부)  
 美國圖書館 恩想의 研究(朴熙永 譯)  
 신착도서목록(한국사회과학도서관)  
 收書目錄(No. 980 國會圖書館)  
 세계로 열린 창(No. 14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세계의 창(Vol. 13, No. 1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新着 및 勸獎 圖書目錄(시립중부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실적 및 현황분석(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立法調査月報(No. 195 國會事務處)  
 어린이와 讀書(No. 11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유네스코뉴스(No. 45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藏書目錄(韓國語圖書篇 IV. 大韓民國國會圖書館)  
 中部圖書館報(No. 16 시립중부도서관)  
 출판저널(No. 75~77 출판저널)  
 圖書館界(Vol. 42, No. 45 日本圖書館硏究會)  
 圖書館雜誌(Vol.84 No. 10~12, Vol. 85 No. 1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情報大學研究報告(Vol. 9, No. 1 圖書館情報大學)  
 現代의 圖書館(Vol. 25, No 1~4 日本圖書館協會)  
 " (Vol. 26, No 2~4 " )  
 " (Vol. 27, No 2~4 " )  
 " (Vol. 28, No 1~3 " )  
 ASIAN SURVEY(Vol. 30, No. 1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IFLA ANNUAL(1989. IFLA)  
 IFLA JOURNAL(Vol. 16, No. 4 IFLA)  
 International Directory of Libraries for the Blind(IFLA)

LIBRARY WORK FOR IMMIGRANTS A HANDBOOK(IFLA)

LONDON CALLING(Vol. 20, No. 1, 2 BBC)  
 NEW ZEALAND Libraries(Vol. 46, No. 6~8 New Zealand Library Association)  
 NEWS LETTER(IFLA)  
 OCLC New letter(No. 187, 188 OCLC)  
 STATUTES RULES OF PROCEDURE(IFLA)  
 Specialist(Vol. 13, No. 11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World Guide to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cience Associations(IFLA)

· 기증도서(김인영 평생회원)

圖書 및 資料를 위한 소련 BBK分類法 I, III, XIV (1967, 1968, 1972 소련文化部, 레닌 소련국립도서관 등 편)

소련大衆圖書館用圖書分類表, 제 3판(1968년)

中日對譯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編輯委員會原編, 近野中國研究所譯 1권 1983년 발행, 2권 1986년 발행, 3권 1989년 발행)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 第3版(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編輯委員會編, 1988년 刊行)

圖書分類法(中國人民大學圖書館集體編著)

中國科學院圖書館圖書分類法(第二版 上·下 2권 1981. 科學出版社)

배부의뢰자료

학생생활지도연구의 1종(195부, 덕성여자대학교)  
 고향적해제(126부, 전북대학교)  
 계열화 자료목록집(540부, 문화예술진흥원)  
 성곽과 봉수(134부,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독립운동사4집의 1종(563부, 독립기념관)  
 서강제21호(90부, 서강대학교)  
 상당지리7호의 2종(575부, 청주대학교)  
 정종복교수화갑논문집(140부, 청주대학교)  
 요람 및 논문집(750부, 명지실업전문대학)  
 失地間島의 歷史地理的 硏究(450부, 건국대학교)